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4] 1.(3)이학요법료 재활로봇 보행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17,740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Care 주 : 1.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 치료 여부 결정, 장애상태 평가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각각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환자 입원 중 3회 이내 산정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다.	
91505	가.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3인)	114,670
91506	나.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4인)	146,330
91507	다.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5인 이상)	177,980
	전문재활환자관리료 주 : 전문재활환자관리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범재활치료 환자에 대하여 산정한다.	
91598	가. 입원(1일당)	24,120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전문재활치료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재활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및 간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3.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주도하에 공동으로 재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목표이행 여부, 재활효과 및 실시방법 등을 재평가 또는 진척도를 관리하고, 재활종합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각각 월 1회만 산정하되, 재활종합계획 평가료는 요양 초기에만 산정하고,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재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재활목표설정 및 진척도를 관리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4인을 초과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이외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일정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산정하되, 재활치료 팀 회의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1519	6.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 15,270원을 별도 산정한다.	
	가.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91509	1)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114,670
91510	2)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초과 1인당)	18,290
91511	3) 재활종합계획 평가료(의사 가산 1인당)	36,590
	나.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	
91512	1)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76,440
91513	2)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초과 1인당)	12,200
91514	3)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의사 가산 1인당)	24,390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주 : 1.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 치료센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의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일정기간(중추신경계손상 수상/수술 후 90일, 근골격계손상 수상/수술 후 60일) 내에 의학적 판단 및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전원 요양하도록 한 경우에 산정하고, 동일 환자는 전원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산정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5일까지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전원 요양하기까지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1545	가. 집중재활전원지원금(30일 이내)	700,000
91546	나. 집중재활전원지원금(60일 이내)	500,000
91547	다. 집중재활전원지원금(90일 이내)	300,000

(2) 검사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상지기능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에 한함)가 해당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약제, 관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2,62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25,24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38,240

91113	6분 보행 검사	4,850
	주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행거리,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91170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	145,470
	주 : 척수손상 등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	
	주 :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91176	가. 선별 심리검사	71,710
91177	나. 심층 심리검사	150,380
	다차원 정신 평가	
	주 : 자동차사고 외상을 경험한 정신·심리적 문제가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신질환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91184	가. 사전 평가	552,830
91185	나. 사후 평가	126,230
91182	동적 족저압측정	52,360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	
	주 : 뇌·척수손상 또는 절단 등으로 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91189	가. 수동	42,100
91190	나. 자동	42,100

(3)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91202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6,920
91203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0,030
91211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8,990
91212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70,910
91213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24,990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91214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35,970
	집단치료(30분당) 주 : 1. 집단치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인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의 환자에게 30분 이상의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91616	가. 운동치료	10,750
91617	나. 작업치료	10,750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Assistive Device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주 : 1. 집중재활치료와 집중의지훈련은 각각 산정할 수 있다. 2. 상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하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30분 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훈련은 1:1 훈련을 30분 단위로 1일 60분 이내로 산정하고, 치료기간은 4주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91609	가. 상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34,910
91610	나. 상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7,230
91611	다. 하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24,980
91612	라. 하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4,980
91618	마.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 훈련(30분당)	40,830
91613	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가정·사회복귀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과제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40,830
91614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보조도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	27,230

	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은 1:1로 1일 6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보조도구별 10회까지 산정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 치료를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615	인지재활훈련(30분당) 주 : 1. 재해일부터 2년 이내의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인지재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인지재활훈련은 1일 120분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26,600
91620	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Gait Assistive Device Training - Robotics 주 : 1.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행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를 활용하여 보조력, 하지 운동범위, 보장, 분속수, 보행속도, 양하지의 조화 등을 환자별로 개인화하여 일상에서의 보행보조기 활용을 목적으로 보행재활훈련과 로봇보행보조기의 착탈과 기립 및 장비운용법을 포함한 활용훈련을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A67020.02, 2등급) 또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 3등급)를 활용한 경우 산정한다. 단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는 보행기능 향상 목적으로 정상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에 한함.	57,610

(4) 수중운동치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91402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53,460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403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5,140
91404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하고, 이후 해당 물리치료사의 관리·감독 하에 환자 스스로 전신 지구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70,280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그램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프로그램의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 에게 평가를 목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평가는 부위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어깨 및 상지·수부·하지 평가를 양측으로 각각 실시한 경우 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허리 평가의 경우 척추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본다.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 평가	
	주 : 1. 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으로 집중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평가는 집중재활프로그램 다차원평가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91157	가. 다차원 어깨 및 상지 평가	78,530
91162	나. 다차원 수부 평가	130,100
91163	다. 다차원 허리 평가	78,250
91165	라. 다차원 하지 평가	80,570
91156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146,360
	주 : 운전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인지, 시지각 및 신체적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운전재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 류	금액(원)
	주 : 해당항목의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근골격계 집중재활프로그램 Musculoskeletal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주 : 1. 집중 재활프로그램은 1:1 수기치료 또는 전담재활치료를 최소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어깨 및 상지·허리·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운동치료(사-106, 사-116)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은 작업치료(사-123)와 같은 날 실시하더라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집중재활프로그램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입원은 1일 2회, 통원은 1일 1회 산정한다.	
91605	가. 어깨 및 상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4,910
91606	나. 수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7,230
91607	다. 허리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33,100
91608	라. 하지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24,980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주 : 1.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1일 4시간 이내,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치료기간은 12주 이내로 적용하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91901	가. 집중 상담(30분당) 주 : 심리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집중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30분당) 주 : 1.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 가족, 동료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강사료 및 소모품비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62,130
91902	1) 4인 이하	35,610
91903	2) 5-7인	24,090
91904	3) 8인 이상	17,800

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나-610 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신경계 질환에만 월 2회 이내 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을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나-661	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월 2회이내 산정
너-771	일상생활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1. 월 2회이내 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너-772	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al Test)	1. 월 2회이내 산정 2. 쥘슨수부평가검사와 오코너 핑거 텍스트리티검사는 검사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 3. 양측은 별도 산정(병변이 있는 경우)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1. 월 2회 이내 산정

	(Range of Motion Test)	2. 같은날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 하지, 수부 3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되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 각각 산정
사-105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1. 상지·하지 관련 상병으로 인한 관절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수기로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16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척성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전산화된 정량적 평가결과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등속성 운동치료'로 산정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인정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1. 보행풀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같은 날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사-128 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1.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3회이내만 산정 2. 같은날 집단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